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8.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258호로 2020년 8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사업 구역 내 혼재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조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생활권과 동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할구역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사업지구 내 혼재되어 있는 행정동 (신길4동, 신길6동)의 관할구역 조정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0. 8. 13. ~ 8. 23.) 결과 : 의견 있음

- 1) 조합측 신청(안)과 같이 신길6동으로 편입 요망
- 2) 차선책으로 기존의 신길4동과 신길6동 경계 유지
- 3) 조합원 입주 완료시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 보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힐스테이트 클래식)이 신길4동과 신길6동의 관할구역에 걸쳐 구획되어 있어 신길6동의 관할 구역인 신길동 3474번지 외 440필지 35,401㎡를 신길4동주민센터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이는 2개동에 걸쳐있는 사업구역의 총 951필지, 93,728 m^2 를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없도록 본 조례안의 '별표' 규정 중 신길6동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 경계조정 전 신길4동의 면적이 0.35 km^2 , 인구는 8,887명이며, 신길6동의 면적 0.68 km^2 , 인구는 18,005명으로 신길6동의 면적과 인구가 신길4동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지구 전체를 신길4동으로 편입하여 동별 면적 및 인구편차의 불균형을 해소함이 바람직함.
- 또한, 위 사업이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입주 전에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행에 앞서 주민들이 행정상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쳐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